



담배의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사건진행경과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갑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을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담배는 제조물인가?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담배는 당연히 제조물인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담배는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거나 그동안 연구된 수많은 자료들에 비추어 보아도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해한 물건을 제조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단 유해물이 아닌 제조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만 담배회사로서는 면책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하여 제조물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담배판매를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제조물로서 지위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제조물에 해당된다.

3. 담배의 결함여부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배제조자인 국가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폐암과 흡연사이의 인과관계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비 특이성 질환인 점, 비소세포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데 편평 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고 비흡연자 중에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분석정리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국에서와 달리 국가와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경향은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존속도 사회유지에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민 변호사

zaid.oh@lexjm.com

